

# 대학원 외국어시험 시행내규

**제1조 (목적)** 내규는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규정한 외국어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응시자격)** ① 대학원 석사과정은 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1. 5., 2010. 12. 3>

② 신학대학원은 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, 4차 학기 이내에 필히 합격하여야 한다. 단, 5차 학기부터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신학대학원 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응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응시료를 부과한다.<2007. 11. 5.>

③ 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4. 20.>

**제3조 (응시절차)**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함께 수험료를 납부한다.

**제4조 (시험일자)** 외국어시험은 매학기 초반에 실시하고, 일시는 시험일시 2주일전에 공고한다.

**제5조 (시험과목)** ① 석사학위과정

1. 영어 : 시험범위는 대학원별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한다.<개정 2007. 9. 1>
2. 불어, 독어, 일어, 중국어 중 택일<개정 2007. 9. 1>
3. 기타 외국어는 원장의 허락을 얻어 응시할 수 있다.

②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

1. 과목 : 각 전공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전공고전어(외국어) 시험을 부과한다. <개정 2007. 3. 1, 2007. 9. 1. 2011. 6. 24.>

학 과	전공분야	과 목
신학과	구약학	히브리어, 헬라어
	신약학	헬라어, 히브리어
	조직신학	헬라어, 라틴어 중 택일
	교회사	헬라어, 라틴어 중 택일
	기독교윤리학	헬라어, 라틴어 중 택일
	실천신학	삭제
	선교신학	헬라어, 라틴어 중 택일
	기독교교육학	삭제
교회음악학과	공 통	영어
사회복지학과	사회복지실천	영어, 불어, 독어, 일어, 중국어 중 택일
	사회복지정책	영어, 불어, 독어, 일어, 중국어 중 택일

※ 성서학(구약학, 신약학)을 제외한 타전공(조직신학, 교회사, 기독교윤리학, 선교신학)의 경우 라틴어를 1학기 수강하여 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전공 고전어(외국어)시험을 면제한다.<개정 2007. 9. 1. 2011. 6. 24.>

2. 시기

- 가. 박사학위과정 재학 중 매학기 응시할 수 있다.
- 나. 종합시험 이전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③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

1. 영어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어

**제6조** (출제위원) 원장이 전조 각 과정, 각 과목당 2인 이상의 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의뢰한다.

**제7조** (배점 및 합격기준) 내규 제5조의 외국어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, 70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**제8조** (합격결정) 외국어시험 결과는 원장의 결재로 합격자를 공고한다.

**제9조** (재시험)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.

**제10조** (면제) ① 신학전문대학원 외국어시험은 다음과 같이 면제한다.

1. 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2. 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특별전형 입학자 중 영어과목을 1학기 수강하여 B0 이상을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 단, 박사과정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석사과정의 학생이 수강할 경우에는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- ② 신학대학원은 영어원서강독 I, II를 수강하여 이수하면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- ③ 최근 2년 이내에 TOEFL(IBT 61점), TOEIC(700점), TEPS(600점), IELTS(Band5) 이상 점수를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07. 11. 5, 2008. 3. 1>
- ④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 영어성적이 70점 이상인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- ⑤ 사회복지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(\*2004학년부터 적용)
- ⑥ 영어권 출신 외국인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을 원장의 결재로 면제할 수 있다.
- ⑦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원장의 결재로 면제할 수 있다.
- ⑧ 상담대학원은 상담학원서강독을 1학기 이수하면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(2010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) <개정 2010. 12. 3.>
- ⑨ 상담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 (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 <신설 2010. 12. 3.>

**제11조** (내규의 제·개정) 이 내규의 제·개정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<개정 2007. 9. 1>

## 부 칙

개정 내규는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개정 내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개정 내규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개정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개정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개정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개정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개정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며, 제2조 2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0조(면제) ⑧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, ⑨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5조(시험과목) ②항 1호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